古文書硏究, 제53호
2018. 8, 139-167쪽
DOI: 10.21027/manusc.2018.53.06

조선후기 제주지역 노비 거래의 양상

- 濟州 於道 晉州姜氏 姜受璜 後孫家 古文書를 중심으로 -

조 정 곤*

目 次

Ⅰ. 머리말
Ⅱ. 어도 진주강씨의 노비매입 현황
1. 노비 매입의 현황
2. 매매가로서 牛馬의 지급
Ⅲ. 육지인과의 노비 매입 방법
Ⅳ. 不忘記에 기재된 노비 거래의 실상
1. 거래 중개인의 역할과 분쟁
2. 本文記의 수취와 분쟁
3. 奴婢價의 先지급과 不忘記 수취
Ⅴ. 맺음말

요약

이 논문은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노비거래 양상을 於道 晉州姜氏 姜受璜 後孫家 고문서를 통해 살펴 본 것이다. 이 가문에는 노비거래명문과 사급입안 및 결송입안을 비롯하여 不忘記·所志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비 거래의 실태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모습을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 문서를 분석한 결과 16세기 말부터 18세기 말까지 노비 매입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비를 매입한 지역은 제주지역도 있었지만 한성·장성·담양 등 육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비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는 17세기까지만 이루어졌다. 매입한 노비의 비율은 奴보다는 婢가 많으며 17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노비를 매입할 때 가격으로 소와 말을 지급하였다.

육지인으로부터의 노비 매입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직접 육지로 가서 노비의 주인과 거래를 하였다. 육지로 간 것이 노비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이기 보다는 과거시험을 보러 갔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박사과정 수료

가 노비를 매입한 것이며 이때 노비의 주인은 육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노비는 제주도에 있었다. 둘째는 육지에 사는 사람이 노비를 데리고 직접 제주도에 왔을 때 노비를 매입하였다. 셋째는 노비를 매입하려는 당사자 대신에 거래 중개인을 통해 육지에 거주하는 노비를 매입하였다.

강수황 후손가에 남아있는 不忘記를 통해 거래 중개인을 통한 노비의 매입 과정에서 중개인이 노비를 데리고 오지 못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비를 받아내고자 했으며 중개인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에서 본문기를 수취하여 노비의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비의 가격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노비를 주겠다는 다짐을 받는 사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는 분쟁의 여지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제주도, 진주강씨, 강수황 후손가, 노비 거래, 거래 중개인, 불망기, 본문기

KCI

Ⅰ. 머리말

조선시대 노비는 토지와 더불어 양반가에서 소유한 재산 현황의 척도가 되며, 사회・경제생활의 일면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였다. 소유 노비가 재산으로서의 기능과 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인해 조선시대에 노비를 사고 파는 행위가 많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본고는 주로 육지에서만 다루어졌던 노비매매에 관하여[1] 제주지역의 사례를 검토해보기 위해 작성하였다. 그간 제주지역의 노비매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지역 노비 거래의 문제는 고창석에 의해 처음 연구되었다. 고창석은 제주지역의 노비매매와 관련된 문서를 탈초하고 번역한 후 연관문서를 분석하여 노비매매의 실태・도망노비의 처리・노비의 매매지역에 관하여 서술하였다.[2] 이 연구는 노비매매와 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제주지역 사노비의 거래 및 존재양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한편 고창석의 연구 이후로 노비매매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이 조사・수집되었다. 2012년 장서각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제주지역의 고문서를 조사・수집한 결과 노비매매명문과 이와 관련된 문서들이 수집되었고, 결송입안도 5점이 추가로 발굴되었다.[3] 이 가운데에는 고창석이 살펴 본 노비매매의 양상 이외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고문서집성』110집에 수록된 제주 어도 진주강씨 강수황 후손가에 수록된 고문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강수황 후손가에는 다른 가문보다 비교적 많은 노비의 거래 명문이 있으며 노비 거래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所志・불망기・退訟記 등의 문서들이 남아있다. 특히 불망기와 소지 등의 문서는 제주인과 육지인의 노비 거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노비 매매 명문을 분석하여 진주강씨가의 노비의 매입에 대해 시기 및 노비 수, 성별, 노비의 가격으로 지급했던 물품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 이외에 육지인에게 노비를 매입한 사실에 주목하여 어떠한 방식을 통해 노비 매입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직접 육지로 나가기도 하였으며, 육지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노비를 팔려고 할 때 매입하였다, 그리고 중개인을 통해 매입하기도 하였다. Ⅳ장에서는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불망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불망기에 기재된 본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의 내용은 노비를 소

1) 이정수・김희호,「조선후기 노비매매 자료를 통해 본 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노비가의 변동」,『한 국민족문화』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문숙자,「17~18세기 초 해남윤씨가의 노비 매입 양상」,『장서각』28, 2012.
안승준,「조선시대 노비 시장과 거래」,『장서각』31, 2017.

2) 고창석,「17세기 제주지방의 노비매매실태」,『제주도사연구』6, 제주도사연구회, 1997.

3) 이러한 조사・수집의 결과물은『고문서집성』3책으로 출간한 바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고문서집성』108 -濟州 涯月 水山里.中嚴里.下加里 古文書-, 2014 ;『고문서집성』110 -於道 晋州 姜氏・朝天 金海金氏・舊左 東來鄭氏 古文書-, 2014, ;『고문서집성』114 -濟州 晉州姜氏・谷山康氏・金海金氏・慶州金氏・濟州高氏・東萊鄭氏 古文書-, 2015.

유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를 미연에 방지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거래 중개인을 통해 매입함으로써 노비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본문기를 수취하지 못하여 생긴 분쟁도 발생하였다. 노비 가를 먼저 지급하고 불망기를 수취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통해 제주지역에 거주했던 한 가문을 통해 노비 거래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어도 진주강씨의 노비 매입 현황

1. 노비 매입의 현황

제주 어도 강수황 후손가의 재산 보유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가문에 남아있는 거래에 관련된 明文 180점과 分財記가 27점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조선후기 동안 지속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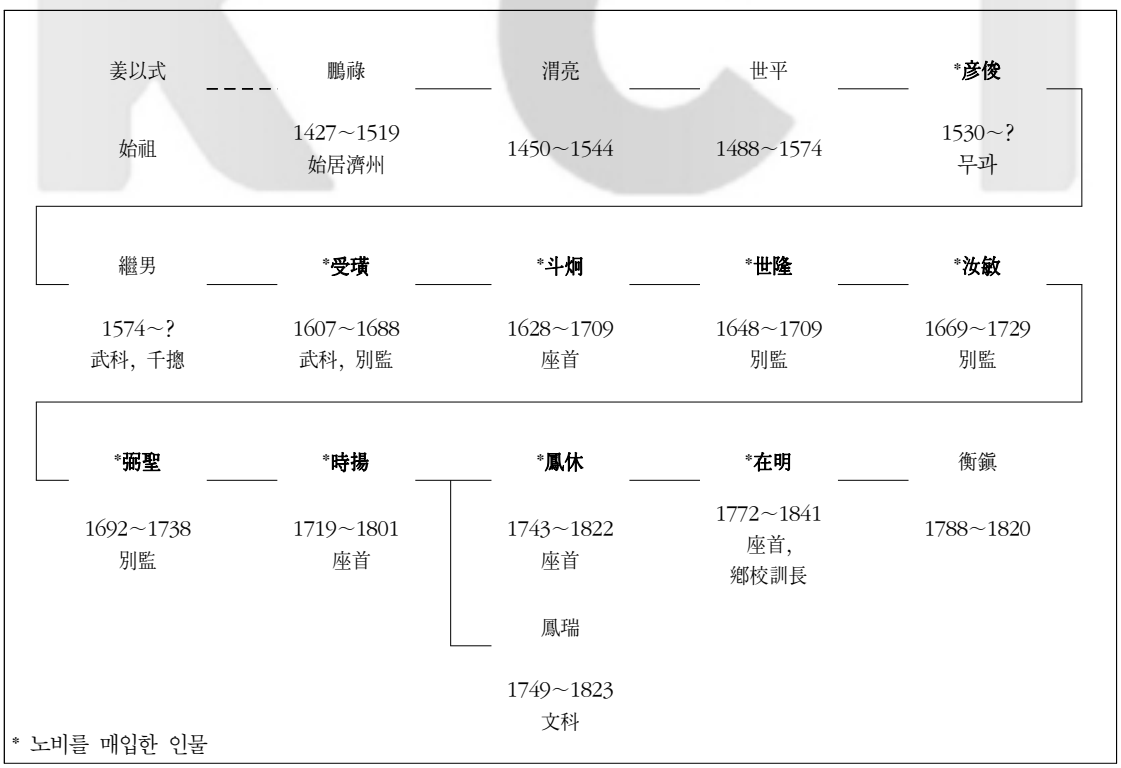

〈圖 1〉 어도 진주강씨 강수황 후손가 가계도

재산을 늘려갔으며, 또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4] 먼저 이 가문의 노비 매입을 이해하기 전에 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 가문의 사회적인 지위를 살펴보면 姜鵬祿이 처음 제주도에 입도한 이후에 姜彦俊이 무과에 급제하였고 그의 아들인 姜繼男과 손자인 강수황도 무과에 급제하였다. 또한 이들은 제주지역에서 座首와 別監 등 향임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회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5] 진주강씨가의 인물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던 시기도 17세기 초부터 19세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거래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가문에 남아있는 토지매매명문의 수량은 17세기에 52건, 18세기에 73건, 19세기에 39건이다. 즉 17세기와 18세기가 재산을 집중적으로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재산을 마련한 인물 기준으로 매입건수를 살펴보면 강수황이 14건, 姜斗炯이 29건, 姜汝敏이 5건, 姜弼聖이 18건, 姜時揚이 10건, 姜鳳休가 27건, 姜在明이 21건이다. 아래의 〈표 1〉을 통해 볼 때 17~18세기에 해당하는 인물 가운데 노비를 매입한 인물과 매입 수를 살펴보면 강수황 2건, 강두형 4건, 강여민 1건, 강필성 3건, 강시양 1건, 강재명 2건, 강봉휴 1건이다. 비록 토지만큼 노비 매입이 이루진 것은 아니지만 진주강씨 가문은 17~18세기에 토지와 노비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다음으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노비 매입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 가문에 전해지는 노비 매입에 관한 수량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表 1〉 강수황 후손가 노비 거래 현황

번호	작성연대	수취자	방매자/거주	거래대상 (나이)	가격	방매사유	본문기재	출처[7]
1	1588년	강언준	柳積/ 漢城府	노1 비1	-	노가 제주에 있음	-	결송1,300~305쪽
2	1652년	강수황	鄭宗一/제주	비 1(20)	正木 66疋	생계가 어려움	○	사급1, 330쪽
3	1657년	강두형	文弘業/제주	노 1(44)	牛馬 3필	죽은 軍馬를 갚기 위함	○	명문24, 517쪽
4	1661년	강두형	沈光流/한성부	노 1(30)	馬 1필, 안장 1部	要用所致	○	사급2, 333쪽
5	1670년	강수황	寺奴 守福/제주	노 1(43)	正木 30疋	생계로 인해 15년간 사환함	-	명문14, 508쪽
6	1673년	강두형	文昌位/제주	비 1(26)	잡곡 8석, 馬1匹, 牛 1首	凶年	○	명문40, 533쪽
7	1687년	강두형	尹慶信/潭陽	비 1(19)	雄馬 5필, 雌馬 1필	要用所致	○	사급3, 337쪽
8	1716년	강여민	車載寶/제주	비 1(12)	正木 13疋	凶年	○	명문53, 546쪽

4) 매매명문은 1599년~1865년까지, 분재기는 1633년~1885년까지 작성되었다.

5) 이들이 제주지역에서 역임한 군직 및 향임직에 임명되면서 발급받은 임명차첩 및 임명전령이 남아있다.

6) 가계도 및 각 문서의 수량은 『고문서집성』에 수록된 해제와 수록된 고문서의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조미은, 「제주도 문중고문서의 유형과 특성」, 『고문서집성』11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47~55쪽(해제), 109~127쪽(목록).

9	1725년	강필성	趙後俊/제주	비 2(42,5)	正木 18疋	作紙 마련으로 正木 18필을 빌림	-	사급5, 346쪽
10	1733년	강필성	許時昌/제주	노 1(16)	正木10필, 牛1首, 馬 1匹	凶年	○	명문73, 566쪽
11	1727년	강필성	文成斗/제주	비 1(18)	正木18疋, 牛1首	債務	○	사급8, 359쪽
12	1740년	강시양	홍씨/제주	노 1(31)	正木 24疋	要用所致	○	명문78, 571쪽
13	1792년	강재명	趙進秀/제주	비 1(14)	正木 10疋	흉년으로 인한 喪事의 용마련	○	사급10, 367쪽
14	1795년	강재명	金初英/제주	비 1(14)	正木 13疋	凶年	○	사급11, 372쪽
15	1795년	강재명	鄭泰僑/제주	비 2 (36,2)	正木 3疋	凶年	○	사급12, 377쪽
16	1795년	강봉휴	梁氏/제주	노 1(29)	正木 10疋	-	○	사급13, 380쪽
17	1795년	강재명	강봉서/제주	노 1구(5)	正木 3疋	要用所致	x	명문115, 608쪽

위의 표는 강수황 후손가에 남아있는 노비거래문기를 통해 노비매입의 현황을 살펴 본 것이다. 약 200여 년 동안 17차례 노비 매입이 있었으며 매입한 전체 노비 수는 총 20구이다. 이와 같은 노비 매입의 양상은 이 가문에 전해지는 토지와 노비의 거래문기가 약 190여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토지의 매입보다 노비의 매입이 현저하게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강수황 가문 이외의 제주지역 가문 고문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며 육지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8] 다만 제주지역으로 한정하여 볼 때 이 가문의 노비 매입 양상은 다른 가문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9]

노비 매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6세기에 1차례, 17세기에 6차례, 18세기에 10차례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10] 이 가문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노비를 매입한 지역은 漢城府·長城[11]·潭陽 등이다. 육지와의 거래는 16세기~17세기에만 이루어졌으며 18세기가 되면 한 차례도 이루어지 않았고

7) 출처는『고문서집성』에 부여된 문서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1〉의 9 사급 5와 16번 사급 13을 제외한 나머지 사급입안에는 모두 노비매매명문이 함께 남아있다.

8) 육지의 사례를 볼 때 해남윤씨의 경우에도 토지매매명문은 661점, 노비매매명문은 51점이 전하며 구문기를 제외하면 총 37차례의 노비 매입이 이루어졌다. 문숙자, 앞의 논문, 140쪽.

9) 현재 공간된 제주 지역 가문 고문서의 경우 노비매매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극히 미미하다. 제주 어도 진주 강씨 강익진 후손가에 소장된 거래명문 91점 가운데 노비매매명문은 1점이며, 제주목 한동리 김해김씨의 경우 명문 48점 가운데 노비매매명문은 1점도 남아있지 않다.『고문서집성』114, 해제 50쪽 참고. 이옥부,『조선후기 제주목 한동리 김해김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15.

10) 19세기 이후부터는 노비매입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19세기 신분제의 변동과 노비 신분의 상승이라는 시대적인 배경과, 노비의 노동생산성 감소, 고공의 존재 등 다양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사노비의 존재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1) 장성에 거주하는 사람과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에서 제외하였다. 이 거래는 Ⅳ장에서 서술하겠다.

모두 제주지역에서 노비의 매입이 이루어졌다.[12] 18세기이후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인구유출로 인한 부세수취의 어려움으로 인해 1629년(인조 7)부터 1823년(순조 23)까지 출륙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이 조치로 인한 것인지, 혹은 제도적으로 육지인과의 노비거래를 금지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가문의 사례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17세기에 있었던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와 중개인을 통한 노비 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분쟁으로 인해 육지에 거주하는 노비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별로 볼 때 노는 8구, 비는 12구를 매입하였는데 16세기 말에 노와 비 1구씩을 매입하였으며 17세기는 노 3구, 비 3구로 총 6구를, 18세기에는 노 5구, 비 7구로 총 12구를 매입하였다. 이는 1회당 평균 1구씩으로, 2구 이상 거래한 경우는 3차례이며, 모두 1구씩 거래하였다. 비의 매입 비율이 조금 높은 것은 소유노비의 재생산성이 고려된 것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는 없다.

매입한 노비의 연령은 노가 5세~44세이다. 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30대에서 40대에 해당한다. 비의 경우는 대부분 20대를 전후한 연령이다. 10번과 18번 문서에서 42세와 36세의 비가 확인되는데 이는 한번에 2명을 매입할 때 5세 이하의 비를 함께 매입했기 때문이다.

강수황 가문에서 노비를 매입할 때의 가격으로 지급했던 물품은 거래가 이루어진 모든 시기에 지급했던 일반적인 물품인 正木과, 안장 및 채찍, 牛馬 등이 있다. 牛馬를 지급하는 사례는 6차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매매의 특징으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방매자의 입장에서 노비를 방매하는 사유는 거래 문기의 투식어로 사용되는 요용소치로 기재한 사례가 17세기 중반부터 나타나지만 이를 기재한 것은 세 차례에 불과하다. 방매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례는 후술하겠지만 제주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同色馬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흉년으로 인하여 생계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번 문서는 趙後俊이 노비의 소송으로 作紙값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강필성에게 正木 18필을 빌려서 내고 승소로 인해 받은 노비 가운데 비 2구를 지불하겠다고 작성한 문서이다.[13] 이와 같이 제주지역의 매매사유의 기재는 육지와 같이 일종의 투식을 기재하는 사례도 있고 육지와는 다르게 제주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사례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매매가로서 牛馬의 지급

조선시대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10곳의 관영목장이 존재하였으며 사영목장도 운영되었다.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많은 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김만일이 말 500필을 국가에 마치고 산마감목관의 벼슬을 후세까지 세습받은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제주 사람들은 말을 팔아서 입고 먹

12) 18세기 이후 육지인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은 이 가문의 사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양한 가문의 사례와 더불어 시대적·사회적인 배경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13) 조후준은 이 문서를 작성해 준 이후 8월에 실제로 노비 2구를 강필성에게 주었다. 강필성은 이후 제주목으로부터 사급입안을 발급받았다. 다만 이 사급입안에 거래 명문은 점련되어 있지 않다.

는 자본을 삼기도 하였으며[14]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의 우마를 분재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즉 제주 지역의 우마는 육지와 마찬가지로 전답 및 노비와 더불어 재산의 영역에 속하였다.

강수황 후손가 가문에서 어느 정도의 우마를 소유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자식들에게 재산으로서 우마를 분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매매가로서 우마를 지급하고 전답과 노비를 매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이 가문은 적지 않은 우마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문에서 우마를 지불하면서 노비를 매입하고 있는 횟수는 총 7차례이다.

〈表 2〉 우마의 지급 사례

번호	연대	매입자	매도자	사유	매입노비 (나이)	거래가	지급한 우마 (나이)				
							수말	암말	수소	암소	기타
1	1657년	강두형	文弘業/ 제주	同色馬	노 1(44)	楮貨 4000장		2 (11,5)	1(3)	1(5)	
2	1661년	강두형	沈光流/ 한성부	要用 所致	노 1(30)	銀子 15냥		1(5)		1(4)	
3	1673년	강두형	文昌位/ 제주	凶年	비 1(26)	正木 2同		1(3)		1(4)	잡곡 8섬
4	1687년	강두형	尹慶信/ 담양	要用 所致	비 1(19)	/	3 (미상)	2 (4,6)			
5	1727년	강필성	文成斗/ 제주	債務	비 1(18)	正木 20疋				1(4)	정목18필
6	1733년	강필성	許時昌/ 제주	凶年	노 1(16)	正木 15疋	1(3)		1(5)		정목10필
7	1758년	강시양	權才元/ 제주	貿販本錢 不足	노 1(23)	正木 15疋	1(4)		1(5)	1(미상)	

위의 표는 노비를 매입하면서 우마를 지급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노비를 매입할 때 다른 물품과 함께 지급한 경우도 있지만 우마만 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표에 의하면 노비를 매입하면서 지급했던 우마는 수말과 수소보다는 암말과 암소의 비중이 높았다. 지급한 우마의 나이는 1번 11살 암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6살 이하였다.

5번과 6번의 사례에서 우마의 가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비 1구를 매입하면서 정한 정목 20필에서 정목 18필과 4살 암소 1마리를 주었으므로 이때 당시 4살 정도의 암소 1마리가 정목 2필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6번의 경우는 정목 15필로 정한 노 1구의 값으로 정목 10필을 지급하고 나머지 5필에 대해 3살 수말과 5살 수소를 각각 1필씩 주었으므로 2~3필의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노비의 가격은『經國大典』注解의 私賤條에 정해진 바와 같이 나이 15세 이상 50세 이하는 저화 4천 장이며, 15세 이하와 51세 이상은 저화 3천 장이었다. 이를 쌀값으로 환산하면 저화 1장이 쌀 한

14)『세종실록』권37, 세종23년(1441) 8월 7일 辛未.

되의 값에 준하므로 노비의 가격은 쌀 3~4천 되에 해당하였다. 상등마 한 마리의 값이 저화 4천장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15세 이상 50세 이하에 해당하는 노비는 上等馬의 가격과 같았다.[15] 법전에 정해진 가격대로 소유재산을 거래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지역의 상황이나 물가의 변동에 따라 각 토지나 노비 및 우마의 가격은 변동되었기 때문에 법전에 명문화된 값으로 재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매매가로서 우마의 지급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방매사유를 통해 우마를 지급하는 사례를 보면 1번은 제주지역의 특징이 드러나며 나머지는 육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유이다.

1번 문서 문홍업의 사례는 故失馬와 同色馬와 관련된 것으로 제주도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 섬 안의 국마는 여러 곳에 놓아서 기르는데 대정현과 정의현이 또한 그러하다. 마둔(馬屯)이 매우 많아서 천지현황(天地玄黃)으로 글자를 배정하여 둔명(屯名)을 붙인다. 한 둔의 말은 적게는 백여 필에 불과하나 목자의 수는 많아야 2~3인도 되지 않는다. 소위 목자라 함은 말을 맡아서 이것을 관리하며 기르는 자이다. 여름과 가을에 풀이 자라날 때는 말이 죽어 쓰러질 근심이 없으나 추운 겨울과 초봄과 같이 풀이 말라 죽을 때에는 말이 굶어 죽는 수가 이루 다 셀 수 없다. 만일 치사한 말이 있으면 목자가 즉시 가죽을 벗겨서 관에 납부하는데 관에서는 마적(馬籍)과 가죽을 비교·대조하여 모색(毛色)이 서로 부합된 연후에 그 가죽을 받아서 고실마로 마적에 올린다. 혹 모색이 차이가 있거나 모피에 손상의 흔적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물리고 받지 않고 즉시 같은 색깔의 말을 목자에게 징수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同色馬라고 부른다.[16]

제주도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10개의 관영 목장이 있었는데 이러한 말들은 대부분 신분이 낮은 목자나 기병들이 사육하였다. 이 말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마적과 대조하여 모색이 같아야 고실마로 처리하였는데 만약 모색이 같지 않을 경우 똑같은 말을 관에 바쳐야 했다.[17] 이러한 사례로써 제주지역 고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同色馬' 이다.

---

15) 고창석, 『제주도 고문서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329~330쪽 각주 5번 재인용

16) 島中 國馬, 以數千匹爲一屯, 發牧於諸處, 兩縣亦然, 馬屯甚多, 以天地玄黃, 排字名屯, 一屯之馬, 少不過百餘匹, 而牧子之數, 多不滿二三人, 所謂牧子者, 援馬而爲之牧之者也, 夏秋草長之時, 則馬無殞斃之患, 而如隆冬春初草枯之時, 則馬之飢餓而死者, 不可勝紀, 如有致死之馬, 則牧子者卽割其皮, 以納于官, 官以馬藉與皮相憑考, 毛色相符然後, 乃捧其皮, 以故失馬載藉, 或有毛色差錯, 皮毛有損傷之痕, 則退之不捧, 卽徵其馬於牧子, 謂之同色馬. 李健, 『葵窓集』 卷11, 「濟州風土記」,

17) 고창석, 앞의 책, 1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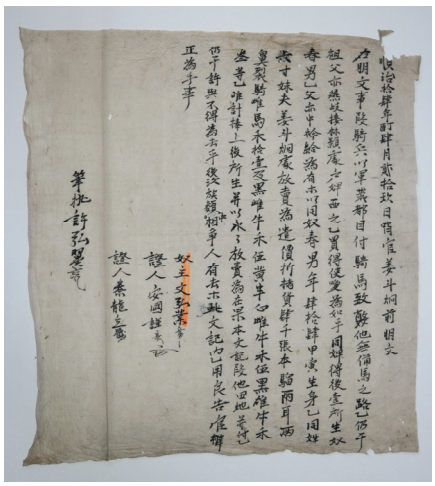

1657년 4월 29일 초관 강두형께 작성하는 명문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騎兵으로서 軍裝의 都目에 부칠 騎馬가 폐사하게 되어 이 말을 갖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부께서 燕岐에 사는 林顯에게 戶婢 西之를 사서 부리다가 호비의 得後 일소생 노 春男을 아버지에게 몫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노 춘남(나이 44, 갑인생)을 육촌 매부인 강두형에게 방매하고 값은 楮貨 4000장으로 정하되 그 대신 11살배기 두 귀와 코가 찢어진 얼룩암말 [騧兩耳兩鼻裂騎雌馬]과 5살배기 검은 암소, 5살배기 누런 암소, 3살배기 검은 수소 등으로 계산하여 받고 후소생을 함께 영영 방매하며 본문기는 다른 밭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지 못합니다. 훗날에 족류 가운데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입니다.……[18]

〈圖 2〉 1657년 문홍업이 강두형에게 작성해 준 노비매매명문

위의 문서는 1657년(효종 8)년에 騎兵인 문홍업이 강두형에게 작성해 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문홍업은 자신이 사육하던 軍馬마가 죽었으므로 군업의 도목에 부치지 못하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노 1명에 우마 3필을 받고 방매하였다. 이러한 동색마로 인해서 소유재산을 파는 사례는 제주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Ⅲ. 육지인과의 노비 매입 방법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강수황 후손가에서 노비를 매입한 지역은 제주목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6세기와 17세기에는 재주가 육지의 한성부, 담양, 장성 등에 거주하는 사람과 노비를 거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강수황 가문에서 육지인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노비를 거래하였을까?

첫 번째 노비 매입의 방식은 육지에 거주하는 주인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거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접 육지에 올라가서 노비를 매입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에는 육지에 있는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고 있는 노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해당 노비를 방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표-1〉의

18) 順治十四年丁酉四月二十九日哨官姜斗炯前明文 右明文事段 騎兵以軍裝都目付騎馬致斃 他無備馬之路乙仍于 祖父亦燕岐接林顯處戶婢西之 乙買得使喚爲如乎 同婢得後一所生奴春男乙 父亦中衿給爲有等以 同奴春男年四十四甲寅生身乙 同姓六寸妹夫 姜斗炯處 放賣爲遣 價折楮貨四千張 本騧兩耳兩鼻裂騎雌馬禾十一及黑雌牛禾五黃牛白雌牛禾五黑雄牛禾三等乙 准計捧上 後所生幷以 永永放賣爲在果 本文記段 他田地幷付乙仍于 許與不得爲去乎 後次族類中相爭人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告官辨正爲乎事. 『고문서집성』110, 명문24, 517쪽.

1번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번 문서는 1601년(선조 34)에 제주목에서 강언준에게 발급해준 결송입안이다.[19] 원고 강언준 및 洪敬源, 梁達源, 金挺傑, 高孝彦 등과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 李順達의 노비 소유권 분쟁으로 1600년(선조 33) 12월 18일에 소송을 개시하여 다음해인 1601년(선조 34) 1월 16일에 송관의 판결에 의해 원고가 승소한 후 강언준에게 발급된 문서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한성에 거주하는 司果 柳積은 1588년(宣祖 21)에 제주에 거주하는 洪敬源·梁達源·李公良·吳夢說·高明允 등이 초시를 보기 위해 상경했을 때 제주에 거주하는 외방노비인 비 厚金과 노 王廻의 소생 17구를 放賣하였고 강언준 또한 노 召叱達과 비 石代 등 2구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유적의 친족인 李奎章이 자신의 노비를 유적이 몰래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둘 사이에 소송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刑曹에서는 17구를 매득하면서 작성한 본문기를 모두 찢으라는 내용의 처분을 제주도에 이관하였다.

노비를 매득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유적에게 그 값을 징수하기 위해 상경하여 소송을 벌이고자 했으며 유적과 이규장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노비 20구를 半分하여 10구씩 和會하여 分執하였다. 이때 유적이 강언준에게 방매했던 노비는 이규장의 몫이 되었으므로 대신 유적의 몫으로 부기된 비 福台와 노 石廻屎 등 2구를 강언준에게 주었다.[20]

이후 이규장의 사위인 이순달이 갑자기 제주도로 와서 강언준이 사환하고 있는 노비가 이규장의 노비라고 주장하며 기송하여 모두 횡탈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소송 당시 거두어서 관의 지통에 보관하였던 매득문기를 이순달이 성주에게 칭념하여 그것을 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언준 등이 이순달을 송장에 나오게 해서 노비를 매입한 문권을 탈취한 일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송입안과 관련 소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인의 경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서울에 갔을 때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노비를 매입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때에 곧바로 掌隷院에 斜給立案의 발급을 신청하고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에는 장예원에서 발급받은 실제 사급입안이 남아있다. 〈표-1〉의 4번 문서는 1661년(현종 2) 9월 8일에 강두형이 沈光流에게 노 今男을 웅마 1필과 안자 1부를 주고 매입한 명문이다. 심광류는 아버지로부

19) 이 결송입안은『고문서집성』에 그 작성연대가 1577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 판단한 것이다. 결송입안의 내용에 임진왜란을 당하자 유적이 선전관으로서 열읍을 횡행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1588년에 초시를 보기 위해 상경한 사실이 위의 소지의 내용 중에 기재되어 있다. 1593년에 올린 소지의 내용과 결송입안의 시면에 결락된 일부 글자가 '丑'로 보이므로 辛丑年인 1601년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20) 所志 姜彦俊 右謹言所志矣段 京中接司果柳積亦 州居婢厚今奴王廻等 所生幷十七口乙 同州居 洪敬源 梁達源 李公良 吳夢說 高明允▣…▣ 賣爲白去乙 矣身段置 去戊子年分 上京時 同柳積處 奴 召叱達 婢 石代等 二口乙 買得爲白有如乎次 柳積三寸李奎章亦 一根奴婢等 自己以合 執盜賣是如 呈刑曹 依法治罪後 同柳積假成本文記乙良 刑曹以攻破叱分不喩 本主人等矣 買得文記乙良置 幷只濟州以攻破事刑曹關字入送乙仍于 前矣買得文記 赴不納官人等乙 州以囚禁督納攻破次以 幷只收上爲白乎等用良 庚寅年分 洪敬源亦 其矣奴婢買得奴婢徵價事以 出陸上京 還入來言內 柳積亦 上項奴婢等乙 其矣三寸李奎章果 各各衿得半分爲有去乙 同衿得文記以 更良成文斜出是如問云(次以)■■亦 去辛卯年九月分上京呈法司 李奎章柳積一時推捉時 柳積亦 自知其罪 矣身前矣買得奴召叱達婢石代等 二口段 柳積三寸李奎章衿得乙仍于 其矣衿得爲白在 婢福台奴石廻屎等乙 奴召叱達婢石代等價本 以許給爲白去乙 衿得兒如更良成文依法斜出入來 同奴婢等乙 推尋爲白乎矣……節制使 處分 萬曆二十一年閏十一月 日所志. 1593년에 작성된 이 소지에도 1601년에 작성된 결송입안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결송입안의 앞부분에 결락이 심하여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 문서를 인용하였다.『고문서집성』110, 소지1, 164쪽.

터 별급받은 노 斤秋의 5소생인 30세 노 今男을 긴히 쓸 곳이 있어서 강두형에게 방매하였다.[21] 그러나 이 명문에는 노비의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심광류의 거주지 또한 불확실하다. 강두형은 거래가 있고 난 후 약 한 달 뒤인 10월 4일에 장예원에 입안신청을 하였고,[22] 사급입안을 발급받았으므로[23] 財主인 심광류와 노비는 한성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비록 입안을 받고자 하는 지역이 그 거리가 멀다고 할지라도 재주가 있는 지역에서 입안을 발급받는 당시의 사급입안 발급제도가 잘 준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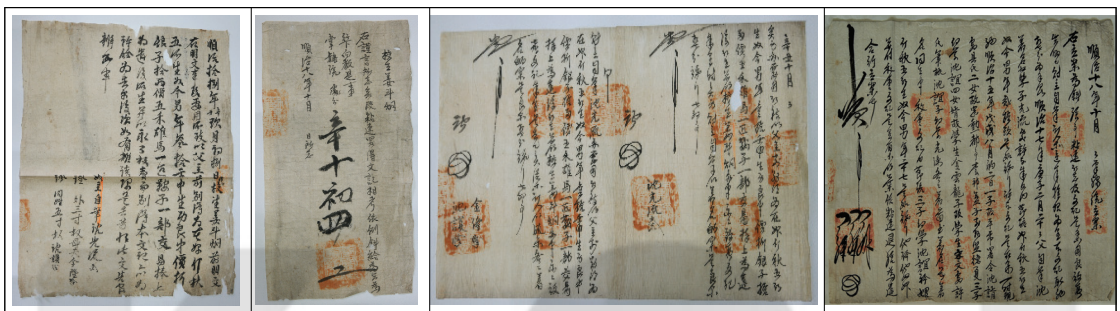

거래명문	소지	초사	사급입안

〈圖 3〉 1661년 강두형과 심광류의 노비거래 관련 문서

두 번째는 육지에 있는 사람이 방매하려는 노비와 함께 직접 제주도에 왔을 때 매입하는 경우이다. 이 사례는 〈표-1〉의 7번 문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1687년(숙종 13) 5월 1일에 尹愛哲은 흉년이 들어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유하던 사내종을 방매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아들 尹慶信에게 제주도에 가서 당시 19세인 노 於屯伊를 방매하고 그 값을 가져오라고 시켰다.[24] 윤경신은 윤애철의 말대로 어둔이를 데리고 직접 제주도로 가서 강두형과 노비 거래를 하였다. 이때 강두형은 노 어둔이를 매입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4 살배기 雄馬 1匹과 雄馬 3匹, 6살배기 雌馬 1匹 합 5필을 윤경신에게 주었다.[25]

---

21) 順治十八年辛丑九月初八日濟州校生姜斗炯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父主前別得爲在 婢斤秋 五所生奴今男年三十壬申生身良中 價折銀子十兩 價五禾雄馬一匹 鞍子一部 交易捧上爲遣 後所生幷以 永永放賣 而別得本文記 亦爲許給爲去乎 後次如有雜談隅是去等 將此文告官辨正事 奴主自筆沈光流[着名]『고문서집성』110, 사급2(명문), 333쪽.

22) 校生姜斗炯 右謹言所志矣段 粘連買得文記相考 依例斜給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掌隷院 處分 順治十八年十月 日所志(題辭)辛十初四『고문서집성』110, 사급2(입안신청소지), 332쪽.

23)『고문서집성』110, 사급2(입안), 335쪽.

24) 康熙二十六年丁卯五月初一日 濟州居品官姜斗炯前明文 右明文事段 父亦鄭斗星處 婢每良四所生奴於屯伊年三己酉生身乙 買得爲有如可 適有要用之事 同奴於屯伊身乙 珍島居李以泰處放賣爲有如乎 同李以泰亦 矣父尹愛哲處 同奴於屯伊乙還爲放賣爲有乎 値此凶荒 生理無策乙仍于 子矣身乙 委送濟州 而所買奴子放賣後 價物捧來亦爲有等以 同婢每良四所生奴於屯伊年十九己酉生身乙 同姜斗炯前 放賣爲遣 價本段 四禾雄馬一匹 禾雄馬三匹 六禾雌馬一匹等 伍匹准計捧持後 同奴於屯伊及本文記粘付立案幷以 同姜斗炯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族類中 如有相爭人是去等 持此文記告官辨正事 奴主潭陽居尹慶信[着名] 證人許孝一[着名] 證人洪周近[左手寸] 筆執金忠建[着名]『고문서집성』110, 사급3(명문), 337쪽.

이와 같은 거래는 본래 財主가 있는 지역에서 입안을 발급받아야 했다. 즉 강두형은 담양에 가서 직접 입안을 받아야 했으나 동년 6월에 제주목에 입안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table>
<tr>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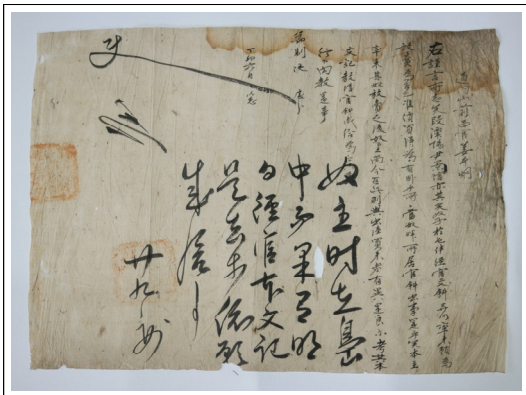 </td>
<td>도내산에 거주하는 전품관 강두형[26]
삼가 말씀드리는 소지는 담양에 거주하는 윤경신이 그의 노자 어둔이를 경관문기를 지니고 데리고 와서 방매하기를 원하여 값을 정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입안의 발급은) 마땅히 노비가 거주하는 관에서 받아야 하지만 본주가 노를 데리고 방매한 이후 아직도 제주도에 있으므로 출륙하여 (노비를) 사가지고 온 것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기를 살펴보신 후 입안을 성급해주기를 바랍니다…
(처분) 奴主가 지금 섬에 있으나 과연 명백한 經官本文記라면 원하는 대로 성급해 줄 일이다. 29일 형</td>
</tr>
<tr>
<td> </td>
<td>1687년 7월 일 제주목입안
입안을 사급하는 일은 … ①강희10년 신해 3월 초6일 자필 재주 鄭斗星이 着名하여 작성해 둔 명문 내에 “婢 梅良 및 同婢 所生婢 分花 노 어둔이 등 2구를 윤애철에게 방매하였다.” 하며 시행한 官斜文記 … ②강희 15년 병진 10월 26일 노비주 윤애철이 착명하여 작성해 둔 명문내에 “정두성에게 매득한 비 문화와 노 어둔이 등 2구를 이이태에게 방매하였다.” 라고한 문기와 경관입안 임 … ③강희26년 3월 초8일 노비주이면서 自筆한 業儒 이이태가 작성해 둔 명문내에 … “노 어둔이 등 2구를 매득사환하다가 윤애철에게 값을 받고 다시 방매하였다.” 라고 작성해 둔 백문이다… 비록 백문이지만 두 장의 본 천적이 명백이 관사문기이므로…[27]</td>
</tr>
</table>

〈圖 4〉 1687년 강두형 입안신청소지와 입안

25) 명문의 내용에는 본문기가 점련된 입안까지 함께 넘겨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문서는 전하지 않는다.

26) 道內山 前品官姜斗炯 右謹言所志矣段 潭陽尹景信亦 其矣奴子於屯伊經官文斜幷以率來 願爲放賣爲去乙 准價買得爲有臥乎所 當奴婢所居官斜出事是乎矣 本主率來其奴 放賣之後 奴主尙今在此 則與出陸買來者 有異是良爾 考其本文記敎後 官斜成給爲只爲…(후략)… 題辭 奴主時在島中 而果有明白經官本文記是去等 依願成給事 卄九日 刑, 『고문서집성』 110, 사급입안3(입안신청소지), 337쪽.

27) 康熙二十六年七月日濟州牧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粘連課狀及證筆各人等進來取招爲置三度本文記取納相考爲乎矣 ①康熙十年辛亥三月初六日自筆財主鄭斗星着名成置明文內 婢梅良及同婢所生婢分花奴於屯伊等二口 尹愛哲處放賣是如 **施行官斜文記** 背頉內同婢分花年庚子奴於屯伊年己酉生身二口 李以泰處放賣是如 **背爻周官署踏印是齊** ②康熙十五年丙辰十月二十六日奴婢主尹愛哲着名成置明文內 鄭斗星處買得婢分花奴於屯伊等二口 李以泰處放賣是如 文記**及經官立案是齊** ③康熙二十六年三月初八日奴婢主 自筆執業儒李以泰成置明文內 婢梅良三所生婢分花果四所生奴於屯伊等二口 康熙十五年分尹愛哲處買得使喚爲如可 同奴婢二口同尹愛哲處准捧價物還爲放賣是如**成置白文是在果** 賣者尹慶信乃以尹愛哲之子 同奴於屯伊身 親率入來放賣果矣父尹愛哲買得文記 **雖是白文 兩度本賤籍明白官斜是乎等以** 買得的實是在姜斗炯處 葉作粘連退給爲遣合行立案者 『고문서집성』 110, 사급입안3(사급입안), 337쪽.

위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강두형은 노 어둔이를 방매한 윤경신이 아직 제주도에 있으며 그가 가지고 온 입안 받은 본문기가 있으므로 이를 상고하여 입안을 요청하였다. 제주목사는 윤경신이 가지고 온 본문기가 입안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것이라면 강두형의 말대로 입안을 발급하도록 처분을 내려주었다. 이때 발급한 사급입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건의 구문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건은 정두성이 윤애철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로서 관으로부터 입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한 건은 윤애철이 李以泰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하고 관으로부터 입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제주목판관은 이 두 건의 문서가 백문이 아닌 관에서 입안을 받은 본문기인 것을 확인하여 비록 이이태가 다시 윤애철에게 노비 2구를 방매했을 때 백문거래를 했더라도 그 소종래를 입증할 수 있었으므로 강두형에게 입안을 발급해주었다.

이 사례는 육지에 거주하는 자가 제주도로 직접 와서 노비를 팔고자 했을 때에 매입한 자가 육지에서 입안을 발급받지 않고, 대신 바로 전의 거래에서 작성된 문서를 관으로부터 입증 받아서 그 소종래가 확실한 것이라면 굳이 재주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제주목에서 입안을 발급해 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입안발급이 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에 거래의 특수성과 지리적인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노비 중개인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노비의 중개인은 양 당사자 사이의 노비 거래를 주선하거나 혹은 그 거래 물품을 전달해 주면서 노비를 직접 데리고 오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제주도에 거주할 때보다 방매자 및 매입하려는 노비가 육지에 있는 경우에 중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표-1〉의 8번과 관련이 있는 문서이다. 아래의 문서는 1692년(肅宗 18) 6월 12일에 金時英이 강세륭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로 이 내용을 통해 중개인으로서 김시영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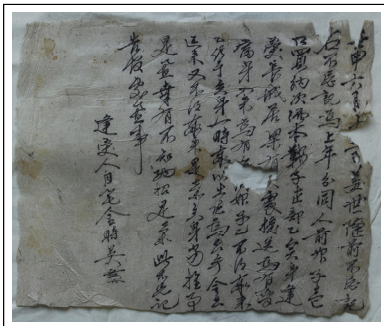

1692년 6월 12일 강세륭께 드리는 불망기
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동인께 비자 1구를 사서 드리기 위해 값을 안자 1부로 하여 제가 맡아두고 장성에 거주하는 양유추에게 授送하였습니다. (그러나) 當身이(양유추를 말함) 入來하여 비를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시에 데리러 출륙하오니 금일에 또 다녀와서 (비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가 마땅히 추궁을 당할 것인데 행여 (이 일을) 모른다고 납초하거든 이 불망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처치하실 일입니다.
봉수인 자필 김시영[28]

〈圖 5〉 1692년 김시영 불망기

김시영은 자신을 逢受人, 즉 물건을 맡아주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강세륭이

28) 壬申六月十二日 姜世隆前不忘記 右不忘記 爲上年分 同人前婢子壹口買納次 價本鞍子一部乙 矣身逢受 長城居梁有秋處 授送爲有如可 當身入來爲有■■婢乙 不得率來乙仍于 矣身一時率以出陸爲去乎 今去還來 又不得率來是去等 矣身當推事是置 幸有不知納招是去等 此不忘記告官處置事 逢受人 自筆 金時英[着名]『고문서집성』110, 불망기3, 440쪽.

소유한 안장과 양유추가 소유한 비 1구를 거래할 때에 안장을 맡아서 양유추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양유추가 비를 데리고 제주도에 오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장성으로 가서 노비를 데리고 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마땅히 추궁을 받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노비주가 직접 제주도로 오는 경우, 그리고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노비주가 직접 제주도로 오는 경우를 제외한 육지인과의 노비거래는 일단 육지로 나가기 위해 순풍을 기다려 출륙하는 배를 기다려야 했으므로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또한 출륙한다고 하더라도 노비를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노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Ⅳ. 不忘記에 기재된 노비 거래의 실상

1. 거래 중개인의 역할과 분쟁

본 절에서 다룰 사례는 앞서 살펴 본 중개인 김시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주목에 거주하는 사람이 육지의 노비를 매득할 때 노비 거래의 중개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노비를 전해 주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이 어떠한지 살펴 볼 수 있다. 노비 거래에 참여한 중개인은 때로는 직접 육지로 가서 노비를 데리고 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제주 어도 진주강씨 강수황 후손가 고문서에는 중개인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문서가 남아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表 3〉 김시영-진주강씨 노비 거래 분쟁 관련 문서

번호	작성연대	문서명	발급자	수취자	출처
1	1691년 4월13일	不忘記	金時英	姜世隆	불망기2, 439쪽
2	1692년 6월12일	不忘記	金時英	姜世隆	불망기3, 440쪽
3	1722년 7월 12일	不忘記	金時英	姜世隆	불망기4, 441쪽
4	1723년 2월	所志	姜汝敏	濟州牧	소지 8, 171쪽
5	1723년 5월17일	明文	金時英	姜汝敏	명문55, 548쪽
6	1723년 11월22일	退訟記	金時英	姜汝敏	퇴송기 1, 455쪽

〈표 3〉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중개인 김시영과[29] 제주도 어도에 거주하는 진주강씨 강세륭(1648~1709) 및 그의 아들 강여민(1669~1729)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문서는 모두 6점이다. 이 분쟁은

강세륭과 장성에 거주하는 양유추 사이의 거래에서 김시영이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분쟁이 발생한 시기는 1691년(숙종 17)부터 1723년(경종 3)까지 약 30여년이다. 이때에 작성된 문서는 6점으로 不忘記가 3점이며, 所志・明文・退訟記가 각각 1점씩 남아있다. 거래의 시작은 1723년(경종 3) 2월에 올린 소지의 앞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 강여민
> 삼가 말씀드리는 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도주께서 坐定하실 때[30] 제주 삼읍(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무사에게 상을 주기 위해 모두 모여 試射한 일이 있는데 그때 저의 아버지(강세륭)께서 삼읍에서 도장원으로 채찍과 안장 1부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목에 거주하는 김시영이라는 자가 빌려 쓴 이후 나이가 20세 되는 비자 1구를 사서 주겠다고 하여 문권을 작성한 후 빌려 갔습니다.…[31]

위의 소지에 의하면 강여민의 부친인 강세륭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의 3읍의 시취에서 도장원으로 선발되어 채찍과 안장 1부를 상으로 받았다. 이때에 제주목에 거주하는 김시영이 20세가 된 비자 1구를 사서 주겠다고 하면서 상으로 받은 채찍과 안장 1부를 문권을 작성하여 주고 빌려갔다. 김시영이 문권을 작성하여 주고 빌려갔다는 문서는 바로 아래의 불망기이다.

> 1691년 4월 13일 강세륭께 드리는 불망기
> 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성에 거주하는 양유추로부터 강세륭댁의 채찍과 안장 1부의 값으로 20세의 婢 1구를 사드리는 일로 (제가) 받아 갔는데(受去) 이는 육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앞으로의 일을 불신할 수 있어서 위의 비자를 …(결락)… 약속을 어기거든 비는 약속한 바에 의하여 제가 담당하는 일로 이와 같이 불망기를 작성하오니 그때에 행여 꾀를 써서 피하여…(결락)…거행하지 않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입니다.
> 보수인 자필 김시영[着名][32]

이 문서는 1691년(숙종 17) 4월 13일에 보수인 김시영이 강세륭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이다. 문서의 내용과 같이 강세륭은 장성에 거주하는 양유추로부터 비 1구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때 김시영이라는 자가 중

---

29) 金時英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이 가문에 소장된 문서 가운데 別監을 지낸 金時英이 改差하여 대신 前把摠姜世隆을 별감으로 차정한다는 내용의 差帖이 남아있다. 이름이 같고 동 시대의 인물이나 동일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이 문서만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문서집성』110, 차첩13, 272쪽.

30) 이때의 제주목사는 李宇恒(?~1722)이며 1689년 5월에 부임하여 1691년 12월까지 재임하였다.

31) 姜汝敏 右謹言所志矣段 李使道坐定時 三邑武士賞格次 都聚試射時 矣父三邑都壯元 則俱鞭入絲馬鞍一部賞得爲有如乎 州居金時英爲名人亦 貸用後 年可二十歲婢子一口買納爲良結 成文貸用後… 『고문서집성』110, 소지 8, 171쪽.

32) 辛未四月十三日姜世隆前不忘記 右不忘記事段 長城居梁有秋 同宅入絲俱鞭鞍子壹部良中 價折二十歲前女婢一口買納事 受去爲矣乎 此人「陸」地居生之人 前頭若有不信 上項婢子乙■■ 違約是去等 同婢子 依所約 矣身擔當事 如是不忘記爲去乎 其時幸有謀避 ■(不)擧是去等 此文告官卞正事 保受人自筆金時英[着名] 『고문서집성』 110, 불망기2, 439쪽.

개인의 역할을 하여 채찍과 안장 1부의 값을 받아서 갔고 양유추가 육지의 사람으로 비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이 담당하겠다는 뜻으로 이 문서를 강세륭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다.

> 1692년 6월 12일 강세륭께 드리는 불망기
> 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동인께 비자 1구를 사서 들이기 위해 값을 안자 1부로 하여 제가 맡아두고 장성에 거주하는 양유추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當身이(양유추를 말함) 入來하여 비를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시에 데리러 출륙하오니 금일에 또 다녀오는데 (비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가 마땅히 추궁을 당할 것이며 행여 낙초해야 함을 모른다고 하면 이 불망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처치하실 일입니다.
> 봉수인 자필 김시영[33]

위의 문서는 1692년(숙종 18) 6월 12일에 김시영이 강세륭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이다. 이 불망기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장성에 거주하는 양유추가 강세륭에게 주어야 할 비 1구를 아직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 사이 거래에서 중개를 담당한 김시영이 출륙하여 비를 데리고 올 것이며 만일 비를 데리고 오지 못할 경우 마땅히 추궁을 받겠다고 강세륭에게 약속을 한 것이다.

소지와 불망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세륭이 무과에 시취하여 도장원이 되어 받은 상을 김시영의 중개로 인해 장성에 거주하는 양유추가 소유한 비 1구와 거래하고자 하였으나 양유추가 계속 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시영이 이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후 약 3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그 사이에 김시영은 강여민이 소지를 작성하기 전 해인 1722년(경종 2)에 강세륭에게 주지 못한 비 1구의 문제로 또 불망기를 작성해야만 했다. 이때에는 비를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강여민에게 준 비가 문제가 되어 작성한 것이다.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이유는 강여민이 연이어 부모와 조모의 상을 당했기 때문이다.[34] 먼저 1698년(숙종 24) 조모인 복성문씨가 사망하였으며, 1709년(숙종 35)에는 조부인 강두형과 아버지인 강세륭이 연이어 사망하였다. 또한 강여민의 어머니인 제주고씨도 1711년(숙종 37)에 사망하여[35] 강여민은 수년간 계속 居喪 중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소지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강세륭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1695년(숙종 21)에 강세륭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때 당시 소유하고 있던 전답과 노비문서가 서실되자 이를 관으로부터 공증받기 위해 입안을 발급받은 일이 있다.[36] 그리고 김시영이 작성한 명문을

---

33) 壬申六月十二日 姜世隆前不忘記 右不忘記 爲上年分 同人前婢子壹口買納次 價本鞍子一部乙 矣身逢受 長城居梁有秋處 授送爲有如可 當身入來爲有■■婢乙 不得率來乙仍于 矣身一時率以出陸爲去乎 今去還來 又不得率來是去等 依身當推事是置 幸有不知納招是去等 此不忘記告官處置事 逢受人 自筆 金時英[着名]『고문서집성』110, 불망기3, 440쪽.

34) 矣身連値父母及祖母之喪 草土之中 如是徵債之事 自然度外 歲久日沈矣『고문서집성』110 소지8, 117쪽.

35)『고문서집성』110 해제 참고.

36)『고문서집성』110 증빙류 입안4. 341~345. 이 문서는 입안신청소지는 전해지지 않고 소유한 재산을 기록한 문서와 삼절린의 초사 및 제주목에서 발급한 입안만 전한다.

통해 볼 때 물건을 건네받은 양유추가 출륙하여 장성으로 갔으나 계속해서 비를 주지 않았고, 결국 사망하였다. 김시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에 정장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37] 강여민의 집안 문제와 더불어 김시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약 30년 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사이에 1723년(경종 3) 강여민이 제주목사에게 올린 소지에 의하면 1722년(景宗 2) 5월 쯤에 김시영이 강여민에게 문권을 작성하여 비 1구를 주었다. 그러나 아래의 1722년(景宗 2)에 김시영이 강여민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를 통해 결국 加叱上의 중복속량 문제로 강여민이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722년 7월 12일 강풍헌께 드리는 불망기
> 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강풍헌께 부채가 있으므로 제가 매득한 비 加叱上의 몸을 문권을 작성하여 드렸으나 가질상이 스스로 良女라고 칭하면서 원통함을 영문에 정장을 올려 취송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에 沈漁했다가 가질상이 도리어 스스로 속량을 원한다고 하여 (제가) 사체를 알지 못하고 가질상에게 속량문을 6월 13일에 성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세륭께서) 이러한 연유로 관에 고하니 (제가) 중복 속량한 죄를 면치 못한다 하므로 십분 애걸복걸하여 우마 가운데 1마리를 오는 17일까지 갖추어 드리겠다는 일로 문서를 작성하여 드리니 만일 기한이 다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폐단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실 일입니다. 報者 자필 김시영(착명)[38]

문서의 내용을 보면 김시영은 스스로 양녀라고 칭한 비 가질상에게 사체를 알지 못하고 속량문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였다. 강여민은 김시영이 비 가질상을 속량한 사실을 알게 되자 관에 고하여 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결국 우마 가운데 1마리를 5일 후인 17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김시영은 약속한 기한 내에 우마를 마련하여 비 가질상의 값을 갚지 않았다. 이에 강여민은 비 가질상에 대해 중복속량한 죄를 처리하여 김시영에게 비를 징급받게 해달라고 제주목사에게 요청하였고 목사는 김시영을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39] 결국 김시영은 자신이 거주하던 집 가사 3칸과 마자 2두부지를 강여민에게 먼저 주고 7월에 비 가질상의 값을 갚으면 환퇴하겠다는 조건으로 명문을 작성하여 주었다.

---

37) 雍正元年癸卯五月十七日前別監姜汝敏前明文 右明文事段 … **同有秋出陸 因不還身故乙仍于** 迄▣…▣爲有如乎 所謂鞍子價推尋次 矣身向爲呈狀累度官訟是乎矣…『고문서집성』110 명문55, 548쪽.

38) 壬寅七月十二日姜風憲前不忘記 右不忘記事段 曾前同前負債是去等以 自己買得婢加叱上身 成文入納爲有如乎 同加叱上亦 自稱良女 稱寃營門呈狀就訟次 去六月十一日 爲始沈漁是如可 前項加叱上亦 反爲自贖願是去乙 不知事体 所謂加叱上贖良文 六月十三日良中成給爲有如乎以次之由告官 則將未免重復贖良罪 故十分哀乞 以牛馬中一首 今十七日備納事如是 成文入納爲去乎 如有限日未給之弊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報者自筆金時英[着名]『고문서집성』110, 불망기4, 441쪽.

39) 姜汝敏 右謹言所志矣段…上年五月分 婢加叱上云 婢子一口 成文報給後 六月分 婢子亦中 贖良文重復成給爲有臥乎所同時英重復放良之罪 依法重治後 婢子徵給 使無空失之嘆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癸卯二月 日 所志 官(押) 題音 推處次 捉來事 卄七. 『고문서집성』110 소지8, 117쪽.

1723년 5월 17일 별감 강여민께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家舍 草家 3칸 1편과 坐地 麻子 2斗付只 동쪽으로는 婢 孝女의 집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官婢 升上의 집에 이르고 남쪽으로 金時傑의 집에 이르며 북쪽으로는 高■…■ 家基田에 이르는 四標가 분명한 곳을 갚고 소위 안장의 값은 오는 7월 내로 갚아 주거든 도로 환급하고 칠월이 지나면 …(결락)…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오니 만약 일후에 환롱하거나 잡담하는 폐단이 있으면 장차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입니다.
報者 자필 김시영[40]

김시영이 이와 같이 명문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강여민은 7월까지 기다려달라는 김시영이 약속을 어기고 값을 지불하지 않자 계속해서 소지를 올려 채찍과 안장 1부의 값을 받아내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간에 강여민이 올린 소지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7년 후에 작성된 김시영의 퇴송기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퇴송기는 송사를 멈추어 주길 요청하면서 작성한 문서로서 육지에는 없는 양식이고 다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서이다.[41]

1730년 11월 22일 강상인께 드리는 퇴송기
퇴송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同人께 비 1구의 값을 빚져서 그때에 비자를 사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형편이 부득이하여 거주하는 곳의 家基 麻子田 2斗付只를 문서를 작성하여 이미 드렸으나 지금 땅의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찍이 전에 매득한 노비를 결득하였으므로 27~28일 사이에 출거하여 결득한 婢를 잡아 드리되 만일 사환할 수 없게 된다면 앞의 가기전을 영원히 드리거나 잡물로 갚아 드릴 일로 애걸하며 송사를 물리치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기한을 어겨서 잡담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입니다.[42]

위 문서는 1730년(영조 6) 11월 22일 김시영이 강여민에게 작성해 준 퇴송기이다. 김시영이 비 1명의 값을 빚졌기 때문에 마자전 2두부지를 환퇴를 조건으로 드렸으나 현재는 땅값이 비싸므로 전에 매득하여 결득

40) 擁正元年癸卯五月拾柒日前別監姜汝敏前明文 右明文事段 去辛未年分 陸人梁有秋爲名者 同人父前 使喚婢子壹口■…■俱鞭鞍子一部貸債時 矣身懸保爲有去乎 同有秋出陸() 不還身故乙仍于迄■…■ 爲有如乎所 爲鞍子債推尋次 矣身向爲呈狀累度官訟是乎矣 窮寒所致 他無報納之策■…■ ■■■■家舍參間 一鞭及坐地麻子貳斗付 東婢孝女家 西官婢升上家 南金時傑家 北高■…■ ■家等四標分明田庫 報納爲在果 所謂鞍子債 來柒月內 報納是去等 還給是遣 過柒月則■…■()事如是成文爲去乎 若有日後變幻雜談之弊是去等 將此文告官卞正事 田主自筆金是英[着名]『고문서집성』110, 명문55, 548쪽.

41) 제주지방에는 퇴송기 뿐만 아니라 수기수표와 같은 성격의 다양한 문서명이 존재하는데 수기・수표・불망기 이외에도 報給記・葉作記・放良文・拮拒文・納侈文・決給文 등이 그것이다. 이 문서명들은 제주지역의 문서작성과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42) 庚戌十一月二十二日姜喪人前退訟記 右退訟記事段 同人前婢子一口價負債 而趁不得婢子買納乙仍于 勢不得已 所居家基麻子二斗付只 成文已納爲有如乎 到此地額大 曾前買得奴婢決得爲有等以 今二十七八日間出去 同婢子捉納是乎矣 若不能使喚 則同基址永納是去乃 以雜物報納事 哀乞退訟爲去乎 如有限日違期雜談之弊是去等 此文告官卞正事 報主自筆金時英[着名]『고문서집성』110, 퇴송기, 455쪽

한 비 1명을 잡아 드릴 것이며 또 사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땅 2두부지를 영영 넘기거나 다른 잡물로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송사를 그만두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명문을 작성한 후부터 퇴송기를 작성할 때까지 김시영은 비 1명의 값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환퇴를 조건으로 넘긴 땅은 강여민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시영과 강세륭・강여민과의 노비 거래 분쟁은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과 육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노비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특히 중개인으로서 김시영의 역할은 육지의 사례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육지의 매매명문에 거래참여자로서의 證人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다.[43]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직접 육지로 건너가서 노비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모습이나 이를 책임지려고 하였던 여러 상황들은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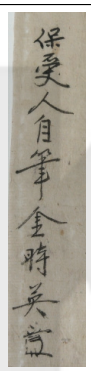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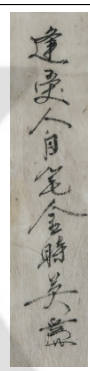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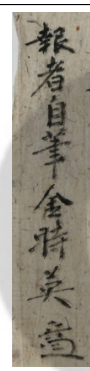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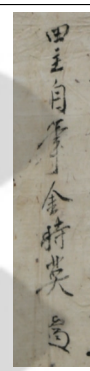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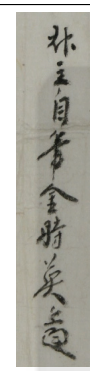
1691년 불망기	1692년 불망기	1722년 불망기	1723년 명문	1730년 퇴송기

〈圖 6〉 문서의 내용에 따른 김시영의 역할

위의 그림을 통해 김시영은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역할에 맞게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를 달리 썼음을 알 수 있다. 보수인과 봉수인은 물건을 받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문서에 기재한 것이다. 報者와 報主는 중개인의 역할보다는 당시 강여민에게 갚아야 할 값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기재방식은 중개자로서의 김시영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43) 김성갑은 증인의 역할이 당사자 간에 매매행위가 있었다는 일을 증명하는 것이 그 직책일 뿐이며, 매매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保人의 경우에는 "保人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명문을 작성하는 매매계약 등의 상황에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는 보인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김성갑, 「조선시대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증인 43쪽, 保人 162쪽

2. 本文記의 수취와 분쟁

이 가문에서는 노비를 매입할 때 값을 지불하였으나 본문기를 넘겨받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본문기는 목적물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서 및 권리증빙문서로써[44] 소유재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그전의 매도자와 거래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매도하는 물건의 소종래를 확인하는 동시에 매입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거래문기에는 본문기 전달의 여부를 기재하였는데 본문기를 넘겨줄 때에는 거래의 대상물과 본문기를 함께 넘겨준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다. 반면에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다른 재산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주지 못하는 이유를 기재하였다.

당시 제주지역 사람들은 매득하는 노비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소유주가 육지인일 경우에 노비 거래를 할 때 그 소종래를 확인하고 차후에 노비의 소유권 문제로 발생할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본문기를 받으려고 하였으며 본문기를 건네받지 못한 채 거래를 할 경우 분쟁에 휘말리곤 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자.

> 1732년 1월 22일 강필성께 드리는 불망기[45]
> 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올해 흉년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영암에 거주하는 이두실에게 매득했던 노 우금 나이 27세인 몸 1구를 同人께 방매하고 값은 정목 18필로 정하여 받은 후 영원히 방매하되 본문기는 아직 찾아 오지 않은 까닭으로 드리지 못하니 지금 출륙하기 때문에 찾아 후에 즉시 받아서 드리겠다는 뜻으로 불망기를 작성하므로 일후 약속을 어기거나 잡담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입니다.
> 노주 한수봉

1732년(영조 8)에 韓秀鳳은 강필성에게 흉년이 들어 살기 어려워지자 靈岩에 거주하는 李斗實에게 매득했던 여종 우금을 정목 18필을 받고 방매하였다. 다만 본문기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으며 육지로 가서 받아 온 즉시 납부하겠다는 뜻으로 불망기를 작성해 주었다.[46] 그러나 본문기를 찾아오지 못한 이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한수봉과 영암에 거주하는 이두실이 본문기를 주고받지 않은 채 노비 거래를 하였으며 차후에 이 노비를 강필성에게 방매할 때에 직접 본문기를 찾으러 출륙하였다.

그런데 만일 본문기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

44) 김성갑, 「조선시대 명문에 관한 문서학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36쪽.

45) 壬子正月二十二日姜弼聖前不忘記 右不忘記事段 當此凶年生 涯爲難乙仍于 靈岩居李斗實處買得爲有在 奴右金年二十七身一口乙同人前放賣 而價本段正木十八疋准捧後 永爲放賣爲乎矣 本文記段 姑未持來之故 未爲許納 而今方出陸 故推來後 卽爲捧納之意 不忘記成納爲去乎 日後若有違約雜談之弊 則持此文告官辨正事 奴主韓秀鳳[着名]『고문서집성』110, 불망기5, 443쪽.

46) 壬子正月二十二日姜弼聖前不忘記 右不忘記事段 當此凶年生涯爲難乙仍于 靈岩居李斗實處 買得爲有在 奴右金年二十七身一口乙 同人前放賣 而價本段正木十八疋 准捧後 永爲放賣爲乎矣 本文記段 姑未推來之故 未爲許納 而今方出陸故推來後 卽爲捧納之意 不忘記成納爲去乎 日後若有違約 雜談之弊 則持此文告官辨正事 奴主韓秀鳳[着名] [左手寸] 筆執許泰逸[着名]『고문서집성』110, 불망기12, 449쪽.

1723년 3월 14일 강필성께 드리는 불망기[47]

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가난한 까닭으로 월남에 거주하는 金時憲에게 매득했던 비 莫今의 일소생 비 文乙任 나이는 16세 무자생의 몸을 가격은 정목 25필로 계산하고 받고 강필성께 영영 방매하오되 본문기는 입안을 사출한 뒤에 전급하는 일로 명문과 불망기를 작성해 두니 안을 사출하는 사이에 혹시 잡담이 있으면 이 불망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비주 손신[着名]

필집 이만실[着名]

위의 문서는 1723년(경종 3) 3월 14일에 비주 孫信이 강필성에게 비 문을임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불망기이다. 노비주 손신은 金時憲에게 매득한 비 막금의 1소생 노 文乙任을 강필성에게 정목 25필을 받고 방매하였다. 그러나 김시헌과 거래할 때 작성한 본문기는 지금 주지 못하고 입안을 사출한 이후에 줄 것이므로 거래 문서와 불망기를 작성하여 준다고 하였다.

이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입안사출은 사급입안이며, 이 입안은 김시헌과 거래할 때 사급입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필성이 사급입안을 받기 위해서는 손신으로부터 본문기를 수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김시헌과의 거래에서 아직 사출입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문기를 주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불망기와 다르게 4년 후 강필성이 제주목에 올린 소지에는 다른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4년이 지난 1727년(영조 3)에 갑자기 林次同이라는 자가 노비를 매득했다고 칭하면서 손신과 상송하여 승소하여 노 문을임을 데리고 가는 일이 발생했다.

유학 강필성

삼가 소지를 올리는 일은 타인에게 손을 잃어버리는 속임을 당한 원통함으로 만만 부득이 하게 우러러 하소연하는 일입니다. 읍내에 거주하는 손신에게 노 1구의 값으로 정목 25필을 내어주었습니다. 임인년쯤에 강진에 거주하는 김시헌이 비를 거느리고 입래하여 손신이 김시헌에게 비자 문을임 1구를 매득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 (결락) … 성출하기 위해 문기를 고열한 즉 손신은 김시헌에게 매득하였고 김시헌은 김석태에게 매득하였으나 "본문기를 잊어두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으로 손신이 본문기를 추심하기 위해 김시헌과 함께 출륙하여 문기를 추심하여 지니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중병을 얻어 오랫동안 병환이 있던 나머지 작년에 읍내에 거주하는 임차동이라고 하는 자가 비 문을임을 매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신과 더불어 본영에서 상송하였습니다. 본영의 분부내에 "너희들의 비자는 비록 매득했다고 칭하지만 양척이 모두 사출문기가 없으므로 마땅히

47) 癸卯三月十四日姜弼聖前不忘記 右不忘事段 貧寒之致以 月南居金時憲處買得爲有在 婢莫今一所生婢文乙任 年十六戊子生身乙 價本段 正木二十五疋乙准計捧上爲遣 同姜弼聖前 永永放賣爲去乎 矣本文記段 斜出立案後傳給事 明文及不忘記成置爲去乎 斜出立案成給間 或有雜談者是去等 持此不忘記告官 辨正事 婢主孫信[着名] 筆執李萬實[着名]『고문서집성』110, 불망기6, 443쪽.

공관의 비로 소속시킬 것이며 동 비자는 흉년에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잠시 사환하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와서 두 해 동안 흉년임에도 근심 없이 생활하였으나 지금 임차동이 성주에게 정소하여 "손신과 상송하여 득결하였다." 라고 하면서 비자 문을임을 추심하고 있습니다. (문을임은) 임차동이 비록 득결한 것이나 올해는 흉년으로 제가 어렵게 기르며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출급하면 실로 원통하며 섬이 풍습에 고공으로써 말한다면 겨울에는 먹이고 여름에 부린다는 것이 금석과 같은 법입니다. 문을임을 흉년에 기르고 생활하게 한 공을 논한다면 올해 여름까지 사환한 후에 출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정세를 잘 살펴보신 후 문을임을 금년 여름까지 사환한 후에 출급하라는 뜻으로 임차동에게 분부하여 주시고 손신은 잡아 가둔 후 제가 (문을임을 매득하면서 지급했던) 價物은 수대로 徵給하게 하실 일로 입지를 내려주십시오…

(처분) 잘못 매득한 노비를 본주인이 추심하여 갔으니 원래 이유 없이 사환했던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찌 고공을 사환하는 예와 비교할 수 있는가. 손신에게 노비의 값을 추심하는 것은 사세가 그러하므로 손신을 본관에 가두고 일일이 징급하게 할 일이다. 24일.[48]

위의 문서는 1727년(영조 3)에 강필성이 어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불망기보다 거래의 정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강필성은 노 1구의 값을 손신에게 주었으며, 손신은 김시헌이 비를 데리고 제주도에 왔을 때 손신이 매득하여 강필성에게 주었다. 그러나 본문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신이 추심하려고 출륙하여 찾아오는 길에 잃어버리게 되었다.

결국 불망기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강필성이 사환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차동이 나타나서 자기가 매득한 비라고 주장하며 손신과 상송을 벌이게 되었다. 관에서는 모두 백문 거래했으니 비인 문을임은 흉년에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잠시 사환하다가 후에 공노비로 삼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대로 강필성이 비 문을임을 사환하였는데 두 해가 지난 후 다시 임차동이 손신과 상송하여 득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비 문을임을 추심하였다.[49] 이에 강필성은 수령에게 고공의 사례를 들며 비 문을임을 여름까지 사환하고 줄 것이며 손신에게 준 正木 값을 徵給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수령은 잘못 매득한 노비는 주인이 추심하여

48) 幼學姜弼聖 右謹言所志矣段 爲人見欺失手之寃 萬不得已仰陳事段 邑內居孫信處 奴一口價正木二十五疋出給爲有如乎去 壬寅年分康津居金時憲爲名者 率婢子入來乙(仍于) 同孫信亦 金時憲處 婢子文乙任身一口 買給矣身是白去乙 矣身亦爲成文買得 而卽ㅁㅁㅁ只成出次考閱文記 則孫信段金時憲處買得 金時憲段金碩太處買得 而本文記忘置於ㅁㅁ 是如乙仍于 同孫信亦本文記推尋次 與金時憲同爲出陸 文記推持 還來路次 偶然見失空還而 因得重病 累年沈痼之餘 上年良中 邑內居林次同爲名者 同婢文乙任 身稱以買得 與孫信相訟於本營 則自本營分付內 汝矣等婢子 雖稱買得兩隻 俱無斜出 則所當屬公官婢是旀 同婢子凶歲豢養之人 姑爲使喚亦分付敎是乎等以 矣身率去ㅁ今兩年 凶荒無患生活爲有如乎乃於今者向前林次同亦呈于案前 與孫信相訟得決是如 婢子文乙任推尋爲臥乎所 林次同亦 渠雖得決 當此凶荒 矣身艱難養活 卽今出給 實爲寃痛叱分不喩 島俗以雇工言之 冬養夏使 金石如法爲臥乎所 同婢子凶歲養活之功論計是白良置 今夏使喚後 出給似爲得當是白去乎 情勢下察敎是後 同婢子今夏使喚後 出給之意 分付次同處爲白乎旀 上項孫信段置捉囚後 矣身價物 如數徵給事 立旨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御使道 處分 丁未四月 日所志 御使 [題辭] 誤買奴婢本主推去 則元無因留使喚可觀是在果 何可比之於在工使喚之例耶 孫信處推價段事勢其然自本官於囚孫 信一一徵給事卄二日ㅁㅁ

49) 비 문을임은 1723년 준호구와 1726년 준호구에 강필성의 소유노비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준호구는 1734년에 작성된 것인데 이 준호구에는 비 문을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고문서집성』110, 준호구 7,8,9. 388~391쪽

갔으므로 원래 이유없이 사환했던 것임을 볼 수 있는데 고공에 비교하여 사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고 노비의 값은 손신을 관에 가두고 징급하라는 제사를 내려주었다. 이후 강필성은 문을임의 값을 손신에게 추심하였고 손신은 여러 차례 갚겠다고 했으나 결국 사망하자 손신의 처인 임옥에게 그 값을 받아내려고 하였다.[50]

이 문서의 내용 중 의문점이 한 가지가 있다. 손신이 과연 불망기를 가지고 오다가 우연히 잃어버렸을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관의 처분에서 보았듯이 백문에 의한 거래를 했다면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급입안의 발급은 노비의 소종래를 조사하여 관으로부터 소유권을 증빙 받는 노비 매매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관에서는 노비의 소종래를 조사하기 위해 신문기를 제외한 노비의 소종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전의 거래 문서나 분재기 등의 문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급입안을 발급해주었다. 그러므로 우연하게 본문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제주지역에서 제주인이 육지인과 노비 거래를 할 때 소종래가 불확실한 노비를 매매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방매・후대응의 차원에서 본문기 없이 노비를 거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필성은 이 사건 이후에도 노비를 한 차례 거래하였고 이때에도 舊文記를 받았다. 1728년(영조 4)에 文成斗는 扶安縣에 거주하는 田禹裁에게 매득한 나이 18세인 비 甘春을 정목 20필로 계산하고 정목 18필과 4살된 암소 한 마리를 받고 강필성에게 방매하였다. 이때에 작성된 명문에는 후소생과 본문기를 함께 강필성에게 영영방매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강필성이 전해 받은 구문기는 문성두가 소유하게 된 경위를 기록한 거래 명문 뿐만 아니라 이때 부안현에서 발급받은 입안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전우재가 비 감춘을 金元重으로부터 매득할 때 작성한 매매명문과 사급입안을 신청할 때 작성한 일괄문서들이 모두 구문기로 남아있다.[51]

이와 같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강수황 후손가에서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는 안정적인 노비 거래가 아니라 거래 후 소유의 안정성 면에서 볼 때 매우 불확실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육지인과의 거래에서 차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승소하여 노비의 값을 추심받기 위해 본문기를 받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불망기를 작성하게 하여 받아놓고 증빙으로 삼고자 했던 노비 거래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3. 奴婢價의 先지급과 不忘記 수취

이 가문의 불망기를 보면 거래에서 노비를 소유하기 전에 값을 미리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노비의 가격을 먼저 지불한 점은 앞서 서술한 강세륭이 김시영이라는 중개인을 통해 노비를 거래한 양상과 비슷하다. 하지만 제 3자가 개입된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50) 幼學姜弼聖 右謹言所志矣段 年前良中邑內居孫信處 婢子一口乙 正木二十五疋 准給買得使喚爲如乎去丁年分 任次同稱漢亦 以買得是如 與其孫信相訟得決 而同婢子率去乙仍于 以此具由呈狀 還推本價之際 正木四疋段 實難准備隨所力還報事 萬分哀乞乙仍于 信聽其言爲有如乎 厥後孫信段身死是遣 同居同衣食是在孫…『고문서집성』110, 소지 12번, 175쪽.

51) 『고문서집성』110, 사급입안 6,7,8. 350~362쪽. 사급입안 7번 문서의 노비거래문기와 8번 문서의 입안신청소지가 남아있지 않다.

1724년 3월 초4일 강천총(강여민)께 작성해 드리는 불망기[52]
불망기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집을 지을 계획인데 지을 땅이 원래 없으므로 (강천총께) 백반으로 애걸하였더니 허락하셨으므로 강천총댁의 밭에 집을 짓고 가기전의 값은 금년 내로 奴나 婢를 사서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목 20필로 갖추어 납부할 일로 불망기를 成置하므로 후에 빙고하여 처리하실 일입니다.
보주 성불행[着名]
필집 문해환[着名]

위의 문서는 1724년(경종 4) 3월 초4일에 報主인 成不幸이라는 자가 강여민에게 작성해 준 불망기이다. 성불행이 집을 지을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강여민이 소유한 가기전을 빌려 집을 짓고 그 값은 노와 비 가운데 1구를 사서 줄 것이며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정목 20필로 대신하여 갚겠다는 내용이다. 강여민은 노비를 받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불망기를 받아두었다. 제주지역에서 노비의 가격을 먼저 지급 하는 사례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제주도 어도 진주강씨 강수황 후손가에 소장된 고문서를 통해 가문의 노비매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가문에는 노비매입의 현황과 분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문서들이 제주에 거주했던 다른 가문에 비해 비교적 많이 소장되어 있다.

먼저 노비매매명문을 분석하여 거래 시기, 노비의 매입 수와 나이, 거래 물품, 방매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6세기 말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약 200여년에 걸쳐서 약 17차례 정도 노비를 매입하려는 정황이 있었다. 이를 통해 매입한 노비의 수는 약 20구 정도였으며, 노보다는 비를 많이 매입하였고, 한 번의 거래에 대부분 1구씩 매입하였으며 2구를 매입한 경우는 두 차례 밖에 없었다. 또한 노비를 매입할 때 우마를 지급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마를 지급한 총 7차례의 거래를 통해 수말과 수소보다는 암말과 암소를 많이 지급하였고, 아울러 우마의 나이가 11살을 제외하고는 모두 6살 이하의 우마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비를 매입하는 방법도 같은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진 거래 이외에 육지인과의 거래에서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 노비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육지에 거주하는 주인의 소유노비가 제주도에 있을 때 매입하는 자들이 육지에 가서 매입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장예원에서 직접 입안을 발급받았다.

52) 甲辰三月初四日姜千摠前不忘記 右不忘記事段 矣身今方造家設計二家基 元無乙仍于 百般哀乞則特許故同宅田庫良 中造家爲在如中家基價本段限今年內以奴 婢中買納是去乃若不然則以正木二十疋備納事 成置不忘記爲去乎後考處之爲白矣事 報主成不幸[着名] 筆執文解桓[着名].『고문서집성』110, 불망기5, 442쪽

두 번째는 육지에 거주하는 노비의 소유주와 노비가 제주도에 왔을 때 노비를 매입한 경우이다. 이 경우 재주가 있는 지역이 아닌 제주도에서 곧바로 입안을 발급받았다. 세 번째는 거래 중개인을 통해 노비를 매입한 경우이다. 이같은 모습을 김시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살펴보았다. 거래중개인은 주로 육지에 거주하는 노비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중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했다.

마지막으로 이 가문에 남아있는 불망기와 관련 소지를 통해 노비매매의 실상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불망기는 고공과 노비와 관련된 것인데 노비의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육지인으로서 노비를 방매하는 자와 제주인으로서 노비를 매득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 거래하였는지 그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문서였다. 이에 대해 먼저 거래 중개인의 역할과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거래 중개인은 자신이 중개한 노비를 전해주지 못했을 경우 육지까지 직접 가서 노비를 전해주고자 하였으며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 소유한 재산을 넘기기도 하였다. 즉 거래 중개인으로서 거래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본문기를 수취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발생한 분쟁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강필성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본문기를 주고 받는 것은 매매에 있어서 거래대상물의 소종래를 확인하고 분쟁의 발생을 억재하기 위한 것이다. 강필성은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에 있어서 본문기를 받지 못했을 때 다짐을 적은 불망기를 받은 후 본문기를 받아내고자 하였다. 본문기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이를 이유로 노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비의 가격을 선지급하고 불망기를 받아두는 사례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진주강씨 강수황 후손가의 노비 매입과 관련된 문서와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자료적인 면에서 동일지역의 다른 가문에 비해 많은 수량과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노비를 매입한 수로 볼 때 이 가문의 사례는 다른 가문보다 비교적 많은 수의 노비를 매입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제주지역의 가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비매매명문은 앞에서도 서술한 바 있지만 그 수량이 미미한 편이다. 셋째는 노비 매입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가문에 소장된 노비 매입에 관한 문서는 대부분 노비 매매 명문과 사급입안이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노비 매입의 실상만 파악할 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가문에는 불망기, 소지, 결송입안 등이 남아있어 노비의 매입의 과정에 발생한 다양한 사실을 제공한다. 특히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에 대한 내용은 그간 육지지역 내부에서 행해졌던 매매에 관한 내용들에 비해 보다 풍부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노비 매입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구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 논문은 제주 어도 진주강씨 강수황 후손가에 소장된 고문서만을 통해 노비의 거래 모습에 대해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노비 거래의 모습을 일반화 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육지인과의 거래에서 규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제주지역에서 있었던 출륙금지령이 육지인과의 노비 거래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살피지 못했다. 거래중개인에 대해서도 이들의 신분이나 중개를 담당할 때의 代價 등을 검토해야한다. 이는 다른 가문의 사례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고문서 이외에 다른 자료도 함께 아울러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 투고일 : 2018년 07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18년 08월 08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08월 10일

참고문헌

『經國大典』
『世宗實錄』
『葵窓集』,「濟州風土記」
『고문서집성』 108, 濟州 涯月 水山里.中嚴里.下加里 古文書, 2014.
『고문서집성』 110, 於道 晋州姜氏・朝天 金海金氏・舊左 東來鄭氏 古文書, 2014.
『고문서집성』 114, 濟州晉州姜氏・谷山康氏・金海金氏・慶州金氏・濟州高氏・東萊鄭氏古文書, 2015.

고창석,『제주도고문서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고창석,「17세기 제주지방의 노비매매실태」,『제주도사연구』 6, 제주도사연구회, 1997.
이정수・김희호,「조선후기 노비매매 자료를 통해 본 노비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노비가의 변동」,『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문숙자,「17~18세기 초 해남윤씨가의 노비 매입 양상」,『장서각』 28, 2012.
김성갑,「조선시대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안승준,「조선시대 노비 시장과 거래」,『장서각』 31, 2017.

Abstract

Conditions of Slave Transactions in Jeju Area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Ancient Documents of Jeju Eado Jinjugang Clan Gangsuhwang Descendant's Family -

JO, Jung-Gon*

This paper examined the conditions of slave transactions in Jeju area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ancient documents of Eado Jinjugang Clan Gangsuhwang Descendant's Family(於道 晉州姜氏 姜受璜 後孫家). Since this family has preserved slave transaction epigraphy, approval documents and lawsuit documents as well as Bulmanggi/Soji(不忘記・所志), it was possible to verify actual conditions of slave transactions and various accidents occurring in the transaction process through their contents.

An analysis of transaction documents shows conditions of slave purchase, from the late 16th century to the late 18th century. Although it was Jeju areas where slaves were purchased, they also purchased from persons living in mainland such as Seoul, Jangseong and Damyang. The slave transactions with landsmen were implemented only until the 17th century. The the ratio of male slave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alves, among purchased slaves, and cows and horses were provided as costs paid for slaves, until the mid-17th century.

It was found that slave transactions with landmen were made in three ways. First, transactions with slaves' owners were made by directly visiting mainland. Such visit to mainland did not aim to purchase slaves, but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s with simultaneously purchasing them, where owners of them resided in mainland, while slaves existed in Jeju island. Second, slaves were also purchased when owners directly visited Jeju, together with their slaves. Third, slaves who lived in mainland were purchased through brokers on behalf of parties who had an intention to purchase them.

* Doctor course completion, Major in Diplomatics and Bibliograph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From Bulmanggi(不忘記) preserved by Gangsuhwang descendant's family, it could found that if it was not easy for a broker to bring slaves, in purchasing slaves through the broker, a purchaser strived to get him/her, though it took long time, and the broker was also responsible for his/her duty. In addition, the purchaser received Bonmungi(本文記) in the slave transactions with landmen,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associated with ownership of slaves, otherwise, some disputes occurred. Finally, there were some cases in which costs for slaves were initially paid, and then slaves were promised to be transferred. Thus, it was found that slave transactions with landmen were made, where many disputes likely to be triggered.

Key words : Jeju, Eado Jinjugang Clan, Gangsuhwang Descendant's Family, slave transactions, broker, Bulmanggi(不忘記), Bonmunggi(本文記)

KCI